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 9. 9.

산업자원부

1. 개정이유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및 기존공장 시설교체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 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동법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공장증설 및 공장시설교체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 부지내 제조시설을 20/100 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고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4항)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당해공장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기존공장은 동일한 규모로 낡은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②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투명성 제고
-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에 통보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의 효력이 산업 자원부가 통합하여 고시한 이후에 발생도록 하여 기업인의 편익 증진 및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4조 제4항 및 제8조제4항)

③ 공장설립승인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권고 이행기간 단축

-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처리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안 제10조제4항)
-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안 제71조제3항)

④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법적 근거 마련

-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애로조정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조의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한다)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절차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고시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고시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3항”은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3항”은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24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4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의 1호 내지 2호, 4호 내지 5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국토이용관리법”은 “(구)국토이용관리법”으로 “동법 제15조”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16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부지내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에는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조시설 증설 전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장 시설물 교체에 관한 특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변경으로 인해 동법 제76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전 기존 공장업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내 시설물(제조설비 및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을 교체할 수 있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 설립완료, 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공장으로서 2003년 1월 1일 이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용도지역 등이 지정·변경되어 당해 공장 업종이 제한되는 경우

2. 동일한 규모의 시설물로 교체하는 경우

제18조의 조제목 중 “준도시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진흥지구”로,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을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제2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기 전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로 한다.

제23조 본문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공장용지”를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8조제1항 3호, 4호, 7호는 이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로서 1종 및 2종 사업장은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8조”로 제4호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으로,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47조제3항 본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전파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을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호의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제54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총리령에 의한 개선계획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대외무역법 제39조”로 제4호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로 제8호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로 하고, 제5호 내지 제6호는 삭제한다.

제55조의7을 삭제한다.

제55조의9제1호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의4를 삭제한다.

제60조의6을 삭제한다.

제60조의12를 삭제한다.

제61조의2(기업애로조정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심의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재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1급 상당 공무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산업자원부장관이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의한 통합고시를 한 날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창업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통합고시)</p> <p>① ~ ② (생 략)</p> <p><u>③ <신 설></u></p>	<p>제4조(창업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통합고시)</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절차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통합고시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u></p>
<p><u>제5조(공장입지금지구역의 고시)</u></p> <p>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내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 공장입지금지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금지지역의 내용을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 또는 민원실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u>제5조(공장입지금지구역의 고시)</u></p> <p>< 삭 제 ></p>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등)</u></p> <p>① 시 · 도지사는 공장설립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할 구역안에서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유도지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설립유도지역 개발계획(이하 "유도 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당해 지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증 시설용지지구에 편입되도록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 · 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및 유도지역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시 · 도지사는 공장설립유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유도지역개발계획과 함께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내용 및 유도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유도지역개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본다.</p> <p>⑥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u>제6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등)</u></p> <p>< 삭제 ></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p> <p>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는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외에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u>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u></p> <p>2. <u>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u></p> <p>3. (생략)</p> <p>4. <u>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접용허가</u></p> <p>5. <u>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u></p>	<p>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p> <p>-----</p> <p>-----</p> <p>-----</p> <p>-----</p> <p>-----</p> <p>-----</p> <p>1. (삭 제)</p> <p>2. (삭 제)</p> <p>3. (현행과 같음)</p> <p>4. (삭 제)</p> <p>5.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p> <p>① ~ ② (생 략)</p> <p>③ 199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신 설></p>	<p>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p> <p>① ~ ② (생 략)</p> <p>③ _____-(구)국토이용관리법-----</p> <p>-----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p> <p>-----</p> <p>-----</p> <p>-----</p> <p>-----</p> <p>-----</p> <p>-----</p> <p>-----</p> <p>④ 산업단지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부지내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증설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인 경우에는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조시설 증설 전 관리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 <신 설>	<p><u>제16조의2(공장 시설물 교체에 관한 특례)</u></p> <p><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u> <u>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u> <u>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이하 용</u> <u>도지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변경</u> <u>으로 인해 동법 제76조 내지 제84조</u> <u>의 규정에 따라 지정·변경 전 기존</u> <u>공장업종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u> <u>이 제한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u> <u>8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u> <u>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u> <u>공장부지내 시설물(제조설비 및 건</u> <u>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u> <u>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을 교체</u> <u>할 수 있다.</u></p> <p><u>1. 2002년 12월 31일 이전 설립완</u> <u>료, 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u> <u>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공장으로</u> <u>서 2003년 1월 1일 이후 국토의계</u> <u>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용도</u> <u>지역 등이 지정·변경되어 당해</u> <u>공장 업종이 제한되는 경우</u></p> <p><u>2. 동일한 규모의 시설물로 교</u> <u>체하는 경우</u></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준도시지역 안에서의 초지 전용에 관한 특례)</p> <p>① <u>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 안에서 초지를 전용하여 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개발행위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신고확인서를 교부하기 전에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초지의 전용허가권한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제1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초지 전용에 관한 특례)</p> <p>① <u>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개발진흥지구-----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u></p> <p>-----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p> <p>-----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p>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략) 3. <u>산업표준화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여야 하는 품질관리담당자</u> 4. <u>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수리업자 및 계량의 자치관리를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계량기사 및 계량기능사</u> 5.~6. (생략) 7. <u>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u> 8.~13. (생략) ② ~ ⑤ (생략)	제28조(기업에 의한 자율고용)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삭제) 5.~6. (현행과 같음) 7. (삭제) 8.~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검사등의 완화) ①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1.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 및 제48조</u> 2~3. (생 략) 4. <u>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7조</u> 5~6. (생 략) ② <u>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프레스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그 시기와 검사기관 및 범위·방법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 ④ (생 략)	제47조(검사등의 완화) ①----- ----- ----- ----- ----- 1.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u> 2~3. (현행과 같음) 4. <u>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u> 5~6. (현행과 같음) ② <u>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u> ③----- ----- <u>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압력용기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 중 압력용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u> -----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전자파장해검정의 완화) 전자파장해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의 공인된 전자파장해검정기관에서 그 기기에 대하여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u>전파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u></p> <p>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 ① 동일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 <u>다음 각호의 표시 중 제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u> 3. (생략) 	<p>제50조(전자파장해검정의 완화) <u>-----</u> <u>-----</u> <u>-----</u> <u>-----</u> <u>-----</u> <u>-----</u> <u>-----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 -----</u> <u>-----</u></p> <p>제52조(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 ①----- <u>----- 다음 각호의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삭제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동일물질의 제조·보관·저장	②-----
장소 또는 운반시설등에 대하여	-----
다음 각호의 표시중 제1호를 포함한 둘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	-----
는 자가 소방방재청장이 환경부	-----
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1호의	-----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
제3호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u>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u>	<u>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u>
<u>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u>	<u>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u>
<u>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제조소등</u>	<u>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표</u>
<u>의 설비기준에 의한 위험물제</u>	<u>지 및 게시판</u>
<u>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u>	
<u>장소·옥내탱크저장소·지하탱</u>	
<u>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u>	
<u>동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의</u>	
<u>표시</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p> <p>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 <u>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u> 또는 <u>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u>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들에 관한 총리령에 의한 개선계획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3. (생 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다.</u></p>	<p>54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p> <p>①----- ----- ----- ----- ----- ----- ----- ----- <u>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1. ~3. (생 략)</p> <p>② (<u>삭제</u>)</p> <p>③ (<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p> <p><u>1. 대외무역법 제44조</u> <u>2~3. (생 략)</u> <u>4.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u> <u>5. 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u> <u>6.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u> <u>7. (생 략)</u> <u>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u></p>	<p>제55조의5(시정지시등의 완화) ----- ----- -----</p> <p><u>1. 대외무역법 제39조</u> <u>2~3. (현행과 같음)</u> <u>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u> <u>5. (삭 제)</u> <u>6. (삭 제)</u> <u>7. (현행과 같음)</u> <u>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u> <u>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u></p>
<p>제55조의7(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에 관련된 의무면제) <u>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특정</u> <u>열사용기자재를 설치 · 시공한 시공</u> <u>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u> <u>의 의무는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u> <u>이를 면제한다.</u></p> <p><u>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조제2</u> <u>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시공기</u> <u>록등의 작성 및 보존의무</u> <u>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1</u> <u>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시공 확인</u> <u>을 받아야 하는 의무</u></p>	<p>제55조의7(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에 관련된 의무면제) <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60조의12(산업안전지도사등에 대한 교육의 완화)</p> <p><u>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동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지도사의 등록을 할 수 있다.</u></p>	<p>제60조의12(산업안전지도사등에 대한 교육의 완화)</p> <p>(삭 제)</p>
<p><u>제61조의2 <신 설></u></p>	<p><u>제61조의2(기업애로조정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u></p> <p>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애로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심의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심의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재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1급 상당 공무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한다.</p> <p>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04. 9. 9)